

제 5 장 부칙 규정

1. 개관

가. 의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폐지하는 법제 활동을 통해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의 본칙에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인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령의 주요 내용이 되는 기본 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 주는 조치로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띤다. 이와 같이 부칙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종전의 법령과 제정·개정 법령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정하고, 제정·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시기·대상 등이나 본칙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부칙 규정들은 본칙에 부수하므로 본칙을 모두 규정한 다음에 ‘부칙’이라는 표제 아래 따로 모아 둔다.

나. 규정 사항과 규정 순서

1) 일반적인 규정 순서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과 그것들을 배열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가)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나)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다)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 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 마)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 바)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 사)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 아)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2) 적용례·특례·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의 규정 순서

적용례·특례·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각각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부칙 규정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경과조치 등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조에 규정을 두거나 해당 규정 바로 뒤에 둔다.

[입법례] 경과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에 둔 사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도입하려는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면 그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규정 바로 뒤에 경과조치를 둔다.

[입법례] 다른 법률 개정 바로 다음에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 법인세법 |
|---|
| 부 칙 |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
|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규정 방식

가) 일반적으로 부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 ① 부칙은 장(章)의 하나가 아니므로 장 번호를 붙이지 않고 “부칙”이란 표제 아래 모아서 규정한다.
- ② 부칙도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되, 조 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는다.⁵⁹⁷⁾

나) 개별법의 형식으로 부칙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

- ①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면 부칙에 규정할 사항만을 분리해 「○○

597) 과거에는 부칙 조문이 2개 이상 5개 이하면 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나, 항을 내용별로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항에 제목을 붙이는 것도 어색하므로 조문의 개수와 관계없이 부칙도 조로 구분하도록 한다.

법 시행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⁵⁹⁸⁾ 이 경우에도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은 모법의 부칙에 두어야 한다.

② 어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다른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을 분리해 「○○법 시행에 따른 ○○법 등 관계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별개의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⁵⁹⁹⁾

다. 유의 사항

부칙에서 개정된 본칙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개정법령이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제○조⁶⁰⁰⁾의 개정규정”으로 표현한다. 특히 본칙에서 신설되거나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제○조의 신설 규정”이나 “제○조의 삭제 규정” 등의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칙에서 삭제된 조문을 부칙에서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인용할 경우 경과 조치 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풀어 쓸 수 있으면 “제○조의 개정규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알기 쉽게 풀어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⁶⁰¹⁾

[입법례] 삭제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알기 쉽게 풀어쓴 사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7875호, 2006. 3. 3.)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⁶⁰²⁾

598) 별도 시행법령은 그 사례가 거의 없는데, 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상법」은 그 부칙 제11조에서 “본법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62. 12. 12. 법률 제1213호로 61개 조의 「상법시행법」이 제정된 바 있다.

599)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타법 개정을 위해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248개 조의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600) 법령을 개정하면서 조 이동이 있었던 경우라면 개정 후 조 번호를 말한다.

601) 부칙에서 해당 부칙의 다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조의 규정”으로 표현한다.

602) 본칙에서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를 삭제하여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의 원칙으로 돌아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가. 법령의 시행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일반 규정에 따라 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⁶⁰³⁾ 그러나 법령의 시행 시기를 법령에서 정해두면 나중에 그 법령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도 서로 연계성과 의존성이 높아져서 여러 법령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른 법령의 시행을 전제로 해서 법령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법령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두어 법령의 시행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시행일 규정의 규정 방식

1) 일반적인 규정 방식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이 법(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도록 개정한 사례이다.

603) 헌법 제53조제7항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법령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별도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만,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부득이하게 법령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상위법령과 동시에 공포하여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상위법령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 국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이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⁶⁰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⁶⁰⁵)

나)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⁶⁰⁶)

이 법(영, 규칙)은 공포 후 ○○일(○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04)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이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60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6) 법령등의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는 그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제2호),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도록(제3호) 규정하고 있다.

[적용 예시]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 법 시행일 → 2021. 3. 23.(공포일과 동일)
- ②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시행일 → 2021. 9. 24.(공포일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3월 24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만료일은 9월 23일이 되며, 시행일은 그 다음날인 9월 24일이 된다)
- ③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의 시행일 → 2023. 3. 24.(공포일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3월 24일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간 만료일은 2023년 3월 23일이 되며, 시행일은 그 다음날인 2023년 3월 24일이 된다)

이 방식은 정책을 집행하거나 시행할 때 국민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다)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영,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법령의 시행일을 확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위 나)의 방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일을 더 분명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 사용한다. 예컨대, 대부분 세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사안의 성격상 법령의 시행일을 특정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법령이 시행됨을 국민에게 사전에 분명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요즘에는 행정의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서로 관련되는 법령의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해야 한다.

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영,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다)의 방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지만, 법령이 특정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날짜가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주로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령이나 조약이 있는 경우처럼 관련 제도 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그 밖의 규정 방식

일반적인 규정 방식 외에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달리하거나, 예외적으로 시행일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가)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달리하는 규정 방식

법령은 하나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모든 조항을 같은 날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⁶⁰⁷⁾에는 필요에 따라 각 부분이 달리 시행되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개정되는 각 조항이 추구하는 정책의 시행 시기가 다른 경우에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다른 조항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서를 두는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되는 조항의 수가 많은 쪽을 본문에, 수가 적은 쪽을 단서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비록 단서에 규정되는 조항의 시행일이 본문의 시행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에 따른다.⁶⁰⁸⁾

[입법례] 시행일을 조항별로 달리 규정하는 사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부 칙 (법률 제9988호, 2010. 1. 27.)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문별로 다른 시행일을 문장 하나로 표현하면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일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607)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은 모두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행일을 복수로 정하는 경우 적용이 유예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 법규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행일을 복수로 규정하는 것은 잘 사용되지 않으나,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시행일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608) 참고로 국회의 실무기준은 어느 하나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① 해당하는 조문이 많은 시행일을 본문에, 해당하는 조문이 적은 시행일은 단서에 두도록 규정하는 방식, ② 시행일이 빠른 순서대로 규정하는 방식, ③ 해당 법률의 핵심취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본문에 두는 방식 등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국회, 『법제기준과 실제』, 2024년, 825쪽).

[입법례] 시행일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한 사례

| 정부조직법 |
|--|
| 부 칙 |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항, 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

또한 어느 한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 중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시행일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 입법례와 같이 “제○조제○항의 개정규정 중 ~ (관련) 부분은 ~ 부터 시행한다”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입법례] 특정 조항 중 일부 내용의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사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 부 칙 |
| (법률 제11229호, 2012. 1. 26.)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적극행정 운영규정 |
|--|
| 부 칙 |
| (대통령령 제31920호, 2021. 7. 27.)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원래 법령의 시행일은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다. 법령이 시행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규정에 대해서도 대상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는데 시행일 규정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입법례⁶⁰⁹⁾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례로 규정하도록 한다.

한편 전부개정 법령의 개정 내용 중 일부규정에 대해 법령 전체의 시행일보다 시행일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 규정에 상응하는 종전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유예된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거나, 적용될 규정의 내용을 직접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례] 전부개정 법령의 유예된 시행일 전까지 적용될 종전의 규정을 명시하는 경과조치 사례

| 관광진흥법(전부개정, 법률 제8343호, 2007. 4. 11.) | |
|---|---|
| 종 전 | 개 정 |
| 제55조(인·허가 등의 의제) ---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 |

609)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6974호, 2003.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입법례] 전부개정 법령의 유예된 시행일 전까지 적용될 내용을 명시하는 경과조치 사례

| 개발이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78호, 2008. 6. 25.) | |
|--|---|
| 종 전 | 개 정 |
| 별표 1의2 7.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 별표 2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 |
| 7.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 |

일부개정의 경우에도 조문번호의 이동이 있는 개정규정의 시행 시기가 유예된 경우, 특히 해당 개정규정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 시기가 유예된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종전 규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하위법령으로 시행일을 위임하는 방식

법령의 시행일은 그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마치는 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⁶¹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7년 6월 1일 이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610) 법률 개정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그 시행일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 제1629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는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시행일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에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경우와 하위법령의 부칙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위임입법의 원칙이 시행일 위임 시에도 적용되므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례]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만든 사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6500호, 2019. 8. 20.)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848호, 2024. 8.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례] 하위법령의 부칙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정한 사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20173호, 2024. 1.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4362호, 2024. 3. 26.)

제2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 2017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란 2024년 5월 1일을 말한다.

다. 시행일을 정할 때의 유의 사항

1) 시행유예기간의 적절한 설정

법령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면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령을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법령의 공포와 시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강조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치법규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법령의 공포와 시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개정을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법령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조례가 시행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2)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시행시점의 적절한 선택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의 시행을 전제로 하면 그 다른 법령의 시행일을 잘 파악하여

시행일을 일치시키거나 그보다 늦추어야 한다. 요즈음은 특히 법령 간에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규정할 때 관련 법령 간의 관계를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3) 법령의 내용에 따라 논리적으로 시행 시점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하지 않으면 집행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면서 이를 주중에 시행하면 시행되는 주간의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등과 같이 시행일을 조정해 주도록 한다. 시행일을 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주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다.

4)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 혼란 방지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법령의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의 시행일과 맞추어 규정하는 등 법령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가. 유효기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령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을 일정한 기간만 시행하도록 미리 예정해서 한시법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⁶¹¹⁾

한시법이나 한시규정을 둘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법령 전체에 대해 유효기간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 유효기간의 규정 방식

1)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한다.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유효기간”⁶¹²⁾이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둔다.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조의 제목으로 “적용기간”과 “유효기간”이 혼용된 적이 있으나, “적용기간”이라고 하면 적용기간이 끝난 후 법령이 실효되는지 아니면 적용만 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기간이 끝나면 실효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유효기간”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611) 이런 경우에도 한시법을 만들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한시법을 제정하게 된다.

612) 유효기간은 효력의 시기와 종기가 함께 규정되어야 하는데, 부칙에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종기만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유효기한” 또는 “존속기한”으로 써야 정확한 것이 되고, 과거에 규제와 관련하여 “존속기한”이라고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유효기간”의 용어가 종래 계속 사용되어 오고 있고 국민들의 이해에 간편한 점도 있으므로 “유효기간”으로 사용한다.

부칙이 시행일 규정과 유효기간 규정뿐이면 유효기간 규정을 위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일 규정에 붙여서 쓰거나 시행일 규정의 단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기간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유효기간을 밝힌 규정을 반드시 따로 두도록 한다.

[입법례] 유효기간을 규정한 사례⁶¹³⁾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
| 부 칙 (법률 제8823호, 2007. 12. 27.) |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
| 부 칙 (법률 제15855호, 2018. 10. 16.) |
|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2) 특정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정 법령이나 전부개정 법령의 부칙에 규정되기 때문에 법령집을 찾아볼 때 본칙에 바로 이어지는 부칙에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으나,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은 일부개정 법령에서 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령집을 찾아볼 때 법령 뒤에 붙어있는 수많은 부칙 중 어느 한 구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시규정을 둔 곳에서 유효기간을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본칙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기도 한다.⁶¹⁴⁾

613) 유효기간은 특정 날짜를 직접 명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두 번째 입법례처럼 시행일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

614) 유효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거나 계속 연장되는 경우라면 본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본칙의 해당 규정 아래에 표시해 주고 있어 유효기간의 존재를 쉽게 찾아볼 수는 있다.

[입법례] 특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부칙에서 규정한 사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1226호, 2012. 1. 26.)

제2조(유효기간)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9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 제90조, 제92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입법례] 특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본칙에서 규정한 사례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3510호, 2015. 11. 20.)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특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칙에서 특정 규정의 실제적 내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본칙에서 그 적용 대상이 한시적임을 표시할 뿐 아니라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입법례] 특정 규정의 실제적 내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본칙에서 규정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3) 하위법령에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문제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비록 하위법령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하위법령도 자연히 실효되므로,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법률의 개별 규정에 유효기간을 두고 그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규정도 상위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규정이 되나, 하위법령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법령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확인적, 안내적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명시해 줄 수도 있다.

[입법례] 확인적 차원에서 하위법령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사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1226호, 2012. 1. 26.)

제2조(유효기간)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9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 제90조, 제92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4054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49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규정 방식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법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규정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제정법령의 부칙에 규정하려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반면에, 개별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형태만 남아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다시 신설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문의 종전 부칙을 개정조문의 부칙으로 오해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은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조문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참고로 특정 규정의 실체적 내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본칙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부개정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유효기간 종료 후 남은 문제의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

1) 한시법 시행 중에 행한 처분 또는 벌칙에 대한 경과규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실효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령이나 특정 조문을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와 같이 경과규정 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벌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빠트리지 말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도록 한다.⁶¹⁵⁾ 유효기간 규정을 두는 경우는 가벌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라기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벌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유효기간 경과 후를 대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
| 부 칙 (법률 제11227호, 2012. 1. 26.) |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제3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
| 제4조(유효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 |

615)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 될 수 있으나,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명문화하여 의문의 여지를 없앤다.

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를 적용한다.

[입법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 칙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제4조 (생략)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한시법 실효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과규정

법령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그 법령에 의하여 진행되던 사무는 계속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잔무 처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구법이 계속 적용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이러한 잔무 처리를 위한 규정은 유효기간에 대한 예외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내용이 다소 길면 별도의 조항으로 할 수도 있다.

[입법례]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한시법이 적용되도록 한 사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 칙

(법률 제7500호, 2005. 5. 26.)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마. ‘규제의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

입법례 중 사실상 특정 조문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규정이 갖는 규제의 한시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효기간’이라는 제목 대신 ‘규제의 존속기간’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그 내용 중에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⁶¹⁶⁾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를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규제 조항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조항의 존속기간을 두는 취지가,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그 규제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규제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조문의 유효기간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제목을 ‘유효기간’으로 통일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규제의 존속기간에 다다를 즈음에 그 규제의 계속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유효기간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라는 제목 아래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처럼 “... 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도 본칙에서 규정한 사례와 부칙에서 규정한 사례가 있다.

[입법례] 본칙에 규제의 존속기간 등을 둔 사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
| 제49조(규제의 존속기간 및 재검토키한)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616)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간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일정 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 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3.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입법례] 부칙에 유효기간으로 규정한 사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2156호, 2014. 1. 1.)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제10호를 적용한다.

4.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

가.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의 필요성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시행하고 있던 법령을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법률을 발전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경우에 전부개정을 하지 않고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두 법률을 통합하는 경우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1건으로 만들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법령안과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법령안을 따로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다가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법령만 입법되고 기존의 법령이 그대로 남게 되면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법령이 존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폐지되는 법령과 새로운 법령을 연결하는 경과조치 등을 규정할 때 관련되는 내용을 같은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이 내용상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입법경제상으로도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본칙의 개정 내용과 제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에 제한되므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은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함에 따라 다른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법령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그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폐지하게 되면 이는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나. 규정 방식

다른 법률(법령)을 폐지하는 조의 제목을 “폐지법률(법령)”로 한 예도 적지 않으나, “다른 법률(법령)의 폐지”로 통일하도록 한다.

폐지되는 법령의 공포번호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공포번호를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혼동할 우려가 있어 공포번호를 인용하려면 폐지되는 법령의 제정 당시의 공포번호(법령이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전부개정 법령의 공포번호)를 인용한다.

폐지하는 법령이 법률이면 법률의 부칙에서, 대통령령이면 대통령령의 부칙에서, 총리령이나 부령이면 각각 총리령이나 부령의 부칙에서 폐지하도록 한다. 부칙에서 부령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관이 제정한 부령만을 폐지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에 따라 행정각부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해서만 부령을 발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폐지한 사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2. 「외국인토지법」 |

다. 법령의 폐지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경과규정

관련 사무가 끝나고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라면 폐지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폐지 전에 무엇인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 준비행위를 규정해 둔다. 또 법령의 폐지에 따라 종전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폐지 법률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태료 및 제재처분 적용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입법례] 법령을 폐지하기 전에 사전 준비행위를 규정한 사례

|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
|---|
| 부 칙 |
| (법률 제7601호, 2005. 7. 13.)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법인의 설립)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

[입법례]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
| 부 칙 |
| (법률 제9440호, 2009. 2. 6.) |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기관별 기본계획을 포함한다)과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가. 사전 준비행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령의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그 법령의 시행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예상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서는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만으로는 준비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준비행위가 사실행위로 충분하다면 법령에 따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준비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준비행위로 무엇인가 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면 그 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준비행위 규정을 두지 않으면 법령의 시행일이 되어야 비로소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고(미리 준비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그 때 가서야 생기게 된다), 사실상 법령의 시행이 늦추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⁶¹⁷⁾

이러한 상황은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정관을 마련한 후 등기를 해야 한다.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한 정관의 의결이나 인가 등 법률 행위를 하려면 이들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근거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다.

617) 예컨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1988년 2월 25일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취임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 전에 대통령선거를 하여야 하는데 그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효력을 가지는 헌법은 1980년에 개정된 헌법으로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1987년 개정 헌법을 공포 시점인 198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 개정 헌법을 바로 실시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개정 헌법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하고 난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후임 대통령의 선거 등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당시 헌법의 규정과 신헌법의 준비행위 규정이 서로 저촉되게 되지만 신헌법의 준비행위 규정이 신법이므로, 우선하게 된다.

나. 사전 준비행위의 규정 방식

1)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부칙에 둔다. 준비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막연히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입법례] 사무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한 사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입법례] 손실보상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한 사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7920호, 2021. 3. 9.) |
| 제3조(손실보상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1.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신청·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조치 |
| 2.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및 관계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입법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한 사례

중자산업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8154호, 2017. 6. 27.)

- 제2조(육묘업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미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2) 특수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없던 특수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있던 것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하며, 철도청과 같은 정부기업 형태의 행정기관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법인의 명칭만을 변경하기도 하고, 기존의 특수법인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특수법인을 설립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수법인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다른 행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를 폐지하기도 한다.

법인은 단순한 집단과는 달리 법적으로 인격이 있으며, 그 활동을 위해 기관(機關)을 두고 일정한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폐지할 때 생각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특수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고 법률 폐지로 사멸하므로 언제나 입법 작업이 따른다. 이러한 입법 작업에는 여러 가지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없던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즉 i) 정관은 누가 작성해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인가, ii) 임원은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iii) 설립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 정관의 작성

일반적으로 일정 수의 설립위원을 위촉해서 정관을 작성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게 한다. 입법례를 보면 주무부장관이 단지 일정 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기도 하고, 설립위원회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설립위원만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면 설립위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여 설립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설립위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다. 설립위원은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업무 이관이 끝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입법례] 설립위원만을 위촉한 사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
| 부 칙 |
| (법률 제6996호, 2003. 12. 11.) |
| 제2조(설립준비)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경과기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 ② 설립위원은 대경과기연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③ (생 략) |
|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경과기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입법례]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사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
| 부 칙 |
| (법률 제13255호, 2015. 3. 27.) |
|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나) 임원의 선임에 관한 문제

특수법인을 신설할 때 임원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수법인의 사장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장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사장을 의결할 이사회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설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임원의 임명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주로 본칙에 있는 임명절차 규정에 대한 특례 형식(‘제○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으로 규정한다.

[입법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0511호, 2011. 3. 30.)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② (생략)

-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 설립비용의 처리 문제

설립비용은 신설되는 특수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수법인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에 따라 특수법인이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정관에 기재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입법례] 신설되는 특수법인이 부담하게 한 사례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
| 부 칙 |
|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
| 제3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
| 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
| ⑥ (생략) |

[입법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사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
| 부 칙 |
| (법률 제8205호, 2007. 1. 3.) |
| 제3조(설립비용) 인력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다. 사전 준비행위를 규정할 때 유의 사항

준비행위를 하는 근거를 시행일 조항에 단서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행위는 법령의 시행일 전에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준비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시행 전에” 등으로 그 조항이 소급적용됨을 밝히게 되므로 준비행위 규정 자체의 시행일을 공포일 등으로 반드시 따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주거급여법

부 칙

(법률 제12333호, 2014. 1.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및 필요성

법령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⁶¹⁸⁾ 그러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 단순히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일 규정 외에 필요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를 “적용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수입 바나나에 관한 관세를 인상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우 일견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바나나의 수입은 ① 외국 바나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② 외국의 항구에서 바나나를 선적하는 단계, ③ 배로

618) 따라서 제재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부터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제정되거나 개정된 제재규정이 적용된다.

바나나를 운송하는 단계, ④ 우리나라의 항구에 도착하여 세관에 바나나 선적사실(적하목록)을 보고하는 단계, ⑤ 바나나를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단계, ⑥ 수입신고를 하는 단계, ⑦ 관세·부가세 등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단계, ⑧ 수입신고필증(면장)을 발급받는 단계, ⑨ 바나나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인상된 관세율을 어느 단계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바나나 수입업자가 인상된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게 되는데,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인상된 관세율을 어느 단계부터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어느 단계부터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준이 적용례이다.

위의 경우 적용례가 없더라도 관세청에서는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적용례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법령이 아니므로 이 기준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서 명확히 해 주는 것이다.

나. 법령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기준과 부칙 필요성

종전에는 법령이 개정되어 신법·구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령 자체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학설과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나, 행정처분의 내용이 제재처분인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⁶¹⁹⁾ 그리고 권리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 등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적용되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관계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진정소급 적용금지의 원칙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 당시의 신법이 적용되는 처분시법주의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위반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되는 행위시법주의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각각 규정하였다.⁶²⁰⁾ 이러한 「행

619)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 12. 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제1항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이 개정되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동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정기본법」에 따른 법 적용기준은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행정기본법」상의 적용기준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

다.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구별

적용례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경과조치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적용례를 두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청은 이를 갈음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은 이를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순간 종전의 법령은 사라져 조치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적용례를 두었다고 하여 적용례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기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 한 것은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는 대신 실무에서는 “~~~ 이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구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인데, 사라진 구법령을 계속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구 법령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구법령의 적용을 받던 경우를 신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법령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적용례 대신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620)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입법례]

| 관세법 |
|--|
| 부 칙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
| 제9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데, 구법을 “적용”하게 되어 의미상 “적용례”에 해당하지만 신법 기준으로는 경과된 사항에 대해 종전의 법을 적용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적용례”라는 제목보다는 “경과조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부칙의 배열 순서에서 적용례를 경과조치보다 앞에 두는 이유도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적용에 관련되는 사항이 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아 먼저 규정하고 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도적 조치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나중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규정 순서

적용례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 1) 일반적 적용례가 있으면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는 그 다음에 둔다.
- 2)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 3)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례가 필요하면 그 개정규정 바로 뒤에 그에 따른 적용례를 둔다.

[입법례] 일반적 적용례와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의 규정 순서

| 법인세법 |
|------------------------------------|
| 부 칙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입법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를 규정한 사례

특허법

부 칙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 을 “3개월” 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 를 “제52조, 제52조의2” 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생 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2조에 따라 개정되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마. 규정 방식

1) 일반적인 규정 방식

적용례를 규정하게 되는 조문의 적용 대상이 사람이나 법인이면 사람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사항(사물)이면 사항(사물)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작성한다. 적용례를 규정하는 기본 형식은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경우(하는 것,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로 표현한다.

[입법례] 사람(법인)을 기준으로 규정한 사례

| 식품위생법 |
|--|
| 부 칙 |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
| 제2조(영업자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⁶²¹⁾⁶²²⁾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

[입법례] 사항(사물)을 기준으로 규정한 사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 부 칙 |
|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
| 제3조(점용료·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621) 시행일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시행일 단서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적용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622) “이 법 시행 후”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으나 시행일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이후”라고 표현한다.

2)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

가) 일반적인 경우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하기도 한다.

[입법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부 칙 |
| (법률 제14086호, 2016. 3. 22.) |
| 제2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시험의 실시와 같이 공고부터 최종 발표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부터 신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험과목 변경 등 시험 응시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 시행 시점만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둔 입법례가 있으나, 시행일 전에 과목변경 등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고 시점과 시행 시점을 연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시험 시행 시점만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둔 사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부 칙 |
| (대통령령 제20594호, 2008. 1. 31.)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7조(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입법례] 공고 시점과 시험 시행 시점을 연계하여 적용례를 둔 사례

경찰공무원 임용령

부 칙

(대통령령 제24275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 공고와 시험 실시는 일련의 절차로서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는 경우, 적용례 규정에서 공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적용례만으로는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 시행일 이전에 과목변경 등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시험 공고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따라서 해석 논란을 피하고, 국민의 법 이해 편의를 위해 최대한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험 공고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 모델

① 공고 시점과 시험 시행 시점을 연계하여 적용례를 두는 경우

제2조(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공고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례 규정과 함께 시행일 전에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관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행위 규정을 두는 경우⁶²³⁾

제2조(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시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시행 후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다.

③ 시행일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시험 공고도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일을 시험 공고일보다 이전으로 규정한 후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두는 경우

제2조(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3)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규정 방식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 개정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⁶²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례를 두도록 한다.

입법 모델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려는 경우

제○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623) 입법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12118호, 1987. 4. 1.)

② (국비유학생선발시험준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은 시험의 과목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624) 과징금제도는 (중략) 업무정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제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있는 후 법령의 개정으로 제재의 정도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제재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새로 도입된 독립된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법제처 2015. 3. 3. 15-0079 해석례).

입법 모델 개정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적용하려는 경우

제○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위반횟수별 가중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등의 규정 방식

제재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횟수별 가중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종전 위반횟수를 개정규정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의 위반횟수 산정 시 포함할지에 대해 부칙에서 적용례를 둘 수 있다.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 위반행위를 위반횟수에 포함하여 가중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위반행위 전력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분을 하는 것이 된다.⁶²⁵⁾

따라서 종전규정에 따른 위반횟수를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시키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소급입법금지 원칙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간이 변경(예: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되거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만 상향(예: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하면서 종래의 위반횟수를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다만, 과태료 금액 상향 폭이 일반적인 예측 수준을 훨씬 넘는 등의 경우에는 적용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적용례를 두도록 한다.

62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입법례] 종전 위반행위를 횡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례

| 항공안전법 시행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32123호, 2021. 11. 16.) |
|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횡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횡수 산정에 포함한다. * 위반행위 횡수 산정 기간(별표 5 제1호가목)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위반횡수별 과태료도 상향된 사례 |

[입법례] 종전 위반행위를 횡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례

| 어선법 시행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28833호, 2018. 4. 24.) |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반행위 횡수별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별표 2 제2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하목) 사례 |

바. 유의 사항

1) 소급적용의 문제

신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두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헌법상 소급입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헌법 제13조제2항), 형벌이나 조세 부과를 비롯하여 국민에 대해 불리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⁶²⁶⁾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신법령으로 인해 침해가 예상되는 신뢰이익의 보호

626)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105 결정

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衡量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적용시점(始點)을 일정 시점(時點)으로 정하는 문제

법령의 적용시점을 사람이나 사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령 시행 이후 일정한 시점(時點)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행일을 늦추는 결과밖에 없는 것이고 적용시점(時點)에 가면 또 다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적용시점을 규정하는 적용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 특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례 규정을 둔다.

나. 특례와 적용례·경과조치의 구별

특례는 구법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신법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며⁶²⁷⁾, 적용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627)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7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특례)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것이고⁶²⁸⁾,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을 신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⁶²⁹⁾ 구법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신법에 대해 내용상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로 규정해야 한다.

[특례·적용례·경과조치 비교]

| 구분 | 특례 | 적용례 | 경과조치 |
|---------|------------------------------------|---------------------------|--------------------------------------|
| 필요성 | 구법령과 신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신법령을 적용하는 대상과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 구법령을 적용하려는 경우 |
| 내용 및 효과 | 신법령에 대한 예외 인정 | 신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명시 | 구법령 적용 |
| 규정방식 예시 | 제○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 제○조의 개정규정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본다). |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법인의 설립 시 부칙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특수법인이 본칙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특수법인이 설립된 다음 해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본칙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부칙 규정은 특수법인이 설립되는 해에만 잠정적으로 규율을 함으로써 본칙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례”로 규정한다. 따라서 다음 ①의 입법례는 “특례”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③의 입법례는 “경과조치” 대신 “특례”라는 제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도에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6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②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2016년 및 2017년에 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으로 본다.

[입법례] ① 조 제목에 “특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사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부 칙

(법률 제8392호, 2007. 4. 27.)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례] ② 조 제목에 “특례”라는 표현을 쓴 사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2005호, 2010. 2. 2.)

제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5일까지 제출한다.

[입법례] ③ 조 제목에 “경과조치”라는 표현을 쓴 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16272호, 1999. 4. 30.)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정보원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규정 방식

특례는 잠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두 규정할 수 있으나, 특례조치가 끝나면 법률관계가 신법으로 규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의 정도를 적절히 해야 한다.

[입법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2245호, 2014. 1. 14.)

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입법례]

공무원임용령

부 칙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특례 자체의 적용 대상 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그 특례에 따른 적용례를 두도록 한다.

[입법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16945호, 2000. 8. 5.)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라. 유의 사항

1) 부칙의 특례와 본칙의 특례

특례는 원칙적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칙과 부칙 어디에도 둘 수 있다.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도래하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잠정적·임시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려면 부칙에 특례를 둔다. 반면에, 특정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라면 본칙에서 이를 규정하여 일반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입법례] 특례를 본칙에 규정한 사례

국민연금법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 및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생략)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본칙에 대한 예외표시 등

특례는 본칙의 규정에 대해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법 제○조제△항 본문에 따른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방식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례의 대상이 규정된 조문(항, 호, 본문, 단서, 전단, 후단까지 특정)과 함께 특례의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입법 명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⁶³⁰⁾

[입법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제2조(학원 등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630) 특례를 규정하려는 법령에서 특례의 대상이 되는 조문과 함께 그 내용까지 특정하여 명시할 경우 향후 특례의 대상이 규정된 법령 조문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에 다른 내용이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특례의 범위를 당초 특례의 대상이 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및 필요성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법령에서는 ‘경과조치’라고 부르고,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부른다. 부칙의 대부분은 이 경과조치가 차지하고 있다.

경과조치는 신규 양 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발전)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신법·구법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데, 입법기술상으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이다. 실제 입법을 할 때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칙 규정에 대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기득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불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득권자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기도 한다. 행정쟁송이나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는 경과조치의 불비로 인한 것이 적지 않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각 조문별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 기득권의 보호 등을 위해 어떤 과도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굳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법령 적용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확인적 차원에서라도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야 한다.

나. 규정 순서

경과조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 1) 일반적 경과조치는 맨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둔다.
- 2)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 3) 경과조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의 실제 규정 뒤에 둔다.⁶³¹⁾
- 4)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과조치가 필요하면 그 개정규정 바로 뒤에 그에 따른 경과 조치를 둔다.⁶³²⁾

다. 규정 방식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신법령과 구법령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법 적용상 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법령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우선 신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용례를 두도록 한다.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구법령이 효력을 상실해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구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631) 「의료법」 부칙(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제4조(간호조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6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5356호, 2018. 1. 16.)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두어야 한다.⁶³³⁾ 이와 같이 구법령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규정하도록 한다. 특히, 경과조치를 규정할 경우에는 집행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나 사항 등 적용 대상이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지 구체적인 법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필요가 있다⁶³⁴⁾.

[입법례]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시킨 사례

| 산지관리법 시행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27235호, 2016. 6. 21.) |
| 제2조(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입법례]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 변경허가를 포함시킨 사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30839호, 2020. 7. 14.) |
|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633) 다만, 차별철폐 등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가3 결정).

634) 종전 기준에 따르면 경과조치에서 “건축허가 신청 등”으로만 표현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중 어디까지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도 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본 해석 사례가 있다(법제처 2018. 12. 7. 18-0533 해석례). 반면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건축허가 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도 있다(법제처 2019. 8. 30. 19-0260 해석례).

[입법례]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 절차 진행 전의 과정을 포함시킨 사례

| 건축법 |
|--|
| 부 칙 |
|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
|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기득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이미 어떤 권리나 법적 지위를 확보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일단 그 권리나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는 경과조치이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규제·의무가 강화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소멸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구법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한다.⁶³⁵⁾

가) 인허가 제도의 신설·변경·폐지

① 인허가 제도의 신설

인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제도 도입 전의 기존 사업자에게 인허가 없이도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신설되는 인허가의 내용·성격, 기존 사업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635)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바, 그 내용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법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바248 결정).

인허가 제도의 신설 시 기존 사업자에 대해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와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지 않고⁶³⁶⁾ 유예기간만을 부여한 입법례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사업자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명확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자연스레 신법령이 적용되어 새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따로 기존 인허가 효력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없다.

[입법례]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지 않고 유예기간만 부여한 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
|--|
| 부 칙 |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
|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 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

반면에 기존 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법령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적용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로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어야 한다.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는 경우의 규정 방식은 인허가 간주

636)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유예기간 내에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으나, 신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지 않고 유예기간 내에 인허가를 받도록 한 입법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
| 부 칙 |
| (대통령령 제25524호, 2014. 7. 28.) |
|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 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규정을 두고 유예기간 내에 인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와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고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입법례]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고 유예기간 내에 인허가를 받도록 한 사례

|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0998호, 2011. 8. 4.) |
| <p>제3조(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공고된 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제공자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호실시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부칙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

[입법례]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고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한 사례

| 통일교육지원법 |
|--|
| 부 칙 (법률 제15433호, 2018. 3. 13.) |
| <p>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

그러나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간주된 인허가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⁶³⁷⁾ 간주된 인허가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필요하다.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인허가를

637)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당연 실효되지는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한 사례가 있다 (법제처 2021. 5. 21. 21-0166 해석례).

받지 않으면 간주된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법률 규정으로 바로 간주된 인허가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방식이 신법에 따른 법질서를 조속히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고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실효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유예기간 내에 신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칙의 규정에 따라 ‘간주된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간주된 인허가의 취소 시 청문 등 절차적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본칙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입법 모델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는 경과조치

㉔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고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제○조(△△△업의 허가/등록/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등록/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개월(○년) 이내에 제○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변경) 허가/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변경) 허가/등록/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허가/등록/인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㉕ 인허가 간주규정을 두고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

제○조(△△△업의 허가/등록/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등록/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개월(○년) 이내에 제○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상 처분권자)는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에 따라 허가/등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취소할 수 있다).

② 인허가 제도의 내용 변경

종래부터 있던 인허가 제도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신법령에서도 그 지위를 잠정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종전의 지위를 신법에서도 항구적으로 인정한 사례

원자력안전법

부 칙

(법률 제12666호, 2014. 5. 21.)

제5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설기계관리법

부 칙

(법률 제14534호, 2017. 1. 17.)

제3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폐기업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우선 기존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신법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기존의 사업자 등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다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유예기간 내에 신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본칙의 규정에 따라 간주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한 사례

하수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4242호, 2012. 12. 20.)

제2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입법례]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사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3445호, 2015. 7. 24.) |
|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 ③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④ (생략) |

③ 인허가 제도의 폐지

종래부터 있던 인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허가가 필요했던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별다른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이나 법적 지위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인허가를 통해 부차적으로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법적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권리나 법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경과조치 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는 아니더라도 종전의 인증이나 확인제도 등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즉 국가의 인증이나 확인에 따라 당사자가 누리던 공신력 등 유형·무형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도 당사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승인제도 폐지 시 경과조치를 둔 사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3316호, 2015. 5. 18.) |
| 제2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그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입법례] 인증제도 폐지 시 경과조치를 둔 사례

소금산업 진흥법

부 칙

(법률 제15915호, 2018. 12. 11.)

제3조(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 인증 및 종전의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천일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나) 자격요건의 변경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등 법정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경우(특히 강화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거나,⁶³⁸⁾ 일정 기간 응시자격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의 자격을 계속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요건을 갖출 수도 없고 특례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면 종전에 자격이 있던 사람은 계속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입법례] 과거의 자격요건을 항구적으로 인정한 사례

공중위생관리법

부 칙

(법률 제15873호, 2018. 12. 11.)

제2조(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638)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시행일규정에서 다루게 되고 경과조치 문제는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법시험법」(법률 제6436호, 2001. 3. 28. 공포)이다. 이 법에서는 대학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을 이수하는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일을 5년 후인 2006년 1월 1일로 하였다(부칙 제1조).

[입법례] 구법령의 자격을 신법령의 자격으로 인정한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 |
|---|
| 부 칙 |
|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
| 제4조(개인정보 인증 심사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입법례] 과거의 자격을 인정하되, 별도 요건과 유예기간을 정한 사례

| 산림보호법 |
|---|
| 부 칙 |
| (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
|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시험과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응시자격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와 유사한 문제가 생긴다.

[입법례] 일정 시기까지 종전의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보도록 한 사례

| 약사법 시행령 |
|--|
| 부 칙 |
| (대통령령 제24775호, 2013. 9. 26.) |
| 제3조(약사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전에 약학을 전공하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약사국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결격사유의 신설·강화

결격사유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적용례를 둔 사례

| 국민체육진흥법 |
|--|
| 부 칙 (법률 제16931호, 2020. 2. 4.) |
|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입법례] 경과조치를 둔 사례

| 관세법 |
|---|
| 부 칙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
|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입법례] 일정 기간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례

| 지방공기업법 |
|---|
| 부 칙 (법률 제13568호, 2015. 12. 15.) |
|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공단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결격사유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않으면 현직자에게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⁶³⁹⁾ 그러나 현직자에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직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3) 처분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인허가 등의 처분청이 변경되면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이나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신고 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처분청을 변경하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법령 개정 전에 처분 관련 신청을 했더라도 새로 권한을 가지게 된 행정청에서 해당 처분을 하게 된다.

종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어지게 되어 처분의 효력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해당 처분 등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처분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새로 처분청이 된 관청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송에 따른 기간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 적법 요건에 따라 처분을 신청한 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기존의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다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 권한이 이관되는 경우

아래의 입법례는 처분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과조치를 둔 것이다. 종전의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의 근

639)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법령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해당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 법령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법제처 2018. 12. 14. 18-0495 해석례).

거가 된 종전 법령이 없어지게 되므로 종전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일회성의 행위허가보다 지속성을 가지는 영업허가의 경우 신법령 하에서 적법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종전 법령에 따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면 새로운 처분청이 일일이 다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변경처분 등도 새로운 처분청에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입법례]

| 건설기계관리법 |
|---|
| 부 칙 (법률 제13784호, 2016. 1. 19.) |
| 제4조(처분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처분 및 사업의 정지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처분청·처분절차 등 개정된 부분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입법례]

| 환경영향평가법 |
|---|
| 부 칙 (법률 제9037호, 2008. 3. 28.) |
| 제1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⁶⁴⁰⁾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한편 경과조치를 두면서 단순히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종전의 규정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위의 근거, 세부 기준과 함께 행정권한도 법령 개정 전의 처분청이 행사하는 것으로

640) 법령을 폐지·제정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해석된다.⁶⁴¹⁾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할 때에는 개정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적용될 종전 규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나)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 법률상 권한자의 표기는 같으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처분권자가 변경되어 표기된다(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음). 권한이 위임된 경우 종전 권한자에게 받은 처분에 대해 새로운 권한자가 한 행위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는 입법례가 있으나,⁶⁴²⁾ 대부분 입법례에서는 위임에 따른 행위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권한 위임에 관한 대부분의 입법례가 행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고, 개정이 비교적 빈번한 위임규정에 대해 이러한 경과조치를 매년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비효율적이므로 행위 간주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다)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

먼저 권한이 위임된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즉 법률상 권한을 위임한 후 그 위임한 권한을 이양(권한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분권자의 변경이 없다.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받은 행정청에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되므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다음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종전 권한자에 의한 처분과 새로운 권한자에 의한 처분 간의 관련성이 미약하므로, 종전 권한자에 의한 처분이 법 개정 이후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⁶⁴³⁾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더

64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두지 않은 경우 위 부칙 규정에서는 종전의 규정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의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인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된 법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권자 역시 종전의 규정인 구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결정하였다(법제처 2016. 12. 1. 16-0465 해석례).

642) 「항공운송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878호, 2009. 12. 14.) 제2조제2항 등

643) 이양받은 행정청이 업무 비용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관련 조례의 제정과 지방의회의 관여가

라도 새로운 권한자가 처리할 수 있으나, 종전 권한자가 절차 진행 중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종전의 권한자가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입법례]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이양한 경우의 경과조치

| 공동주택관리법 |
|---|
| 부 칙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
| 제23조(시·도지사의 대도시 시장으로의 권한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 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8조에서 시·도지사를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입법례] 종전의 권한자가 처리하게 할 경우의 경과조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
|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

가능해지는 등 사무 자체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4) 행정기관이 개편되는 경우 필요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이 개편되는 모습을 보면 없던 기관이 새로 설치되거나 기존의 행정기관의 일부 기능을 넘겨받아 설치되거나 두 행정기관이 통합되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의 명칭만이 바뀌기도 한다.

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든지 행정기관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경과조치가 있다. i) 사무의 이관, ii) 직원의 승계, iii) 정무직의 처리, iv) 법규명령의 정리, v)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그리고 vi) 예산의 이체 등이 그것이다.

가) 사무의 이관

가장 기본적인 표현 형식은 “○○○의 소관 사무는 ◇◇◇가 승계한다”는 표현이다.

소관 사무의 일부만 이관하거나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관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 소관 사무 중 △△△사무는 ◇◇◇가 승계한다”는 형식을 사용한다.

[입법례]

| 정부조직법 | |
|---|-------------|
| 부 칙 | |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
|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
|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 대통령경호처장 |
|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 행정안전부장관 |
|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부장관 |
| | |
| ②·③ (생략) | |

개인정보 보호법

부 칙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신고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에는 각 부처의 소관 사무가 개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기존의 다른 법률을 개정하여 사무를 이관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입법례]

정부조직법

부 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질병관리청장이 승계한다.

②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 ③③ (생략)

나) 직원의 승계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 소속 공무원은 ◇◇◇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이다.

[입법례]

| 정부조직법 | |
|--|-------------------------------------|
| 부 칙 (법률 제17472호, 2017. 7. 26.) | |
|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
| 국민안전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
| | |

승계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승계되는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례

| 정부조직법 | |
|--|--|
| 부 칙 (법률 제15624호, 2018. 6. 8.) | |
|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생략) | |

이와 같이 승계되는 범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는 직제 개정령 부칙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입법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 칙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5명, 6급 36명, 7급 37명, 8급 27명, 9급 25명, 연구사 27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다) 정무직에 관한 문제

정무직은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이 설치되는 개별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무직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개편되어 공무원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정무직도 자동승계가 되는지, 자동승계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법례를 보면 대규모 정부조직개편 등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무직의 경우에도 임기가 있거나 정무직을 교체하지 않고 소속만 달리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자동승계가 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입법례] 정무직을 공무원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정부조직법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표 생략)

③ (생략)

[입법례] 정무직을 공무원 승계 대상에 포함한 사례

| 정부조직법 |
|---|
| 부 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⁶⁴⁴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라) 법규명령의 정리 문제

사무가 승계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이미 총리령이나 부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면 이들 법규명령의 소관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종전에는 기존의 총리령·부령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법적 근거는 모호하다. 따라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 정부조직법 | |
|---|-------|
| 부 칙 (법률 제10339호, 2018. 6. 8.) | |
|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 |
|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 환경부장관 |
|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 |

644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대통령령 제31014호, 2020. 9. 11.)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

이와 같이 정리해도 신설되는 기관의 부령은 제1호부터 발령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종전의 부령을 개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민에 대해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소관 사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는 일은 없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상의 사무구분은 개략적인 것에 그치고 거의 모든 행정작용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조정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해 주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변경됐을 때 두는 경과조치와 같은 유형의 경과조치를 두게 된다.

[입법례]

| 정부조직법 |
|--|
|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 *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 |

바) 예산의 이체에 관한 문제

행정기관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소속 변경 등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을 이체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때 예산 이체 문제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⁶⁴⁵⁾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645)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5) 회계법규의 개정으로 소관회계가 달라지는 경우의 경과조치

특별회계법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소관 회계가 변경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나 자금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들 필요가 있다.

[입법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2215호, 2014. 1. 7.)

제5조(재산 및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9137호, 2008. 12. 11.)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4조(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교도작업특별회계로 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 칙

(법률 제12858호, 2014. 12. 23.)

제3조(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6) 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가)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개편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관 사무의 승계,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둔다.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명칭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둔다.

[입법례]

적극행정 운영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30968호, 2020. 8. 25.)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나) 위원회의 소관 사무 또는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 사무 또는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 시행일부터 새로운 사무 또는 기능을 수행하면 되므로 별도의 부칙 규정은 필요 없다. 소관 사무 또는 기능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무나 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입법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5091호, 2014. 1. 14.)

제2조(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민간위원이나 여성위원의 비율 등 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므로, 별도의 부칙 규정은 필요 없다.

위원의 수를 줄이거나 구성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정수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시행일을 충분히 유예하거나,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등의 부칙 규정을 두도록 한다. 다만,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유예를 둔다.

[입법례]

| 국가인권위원회법 |
|--|
| 부 칙 (법률 제14028호, 2016. 2. 3.) |
| 제4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선출·지명하거나 임명할 당시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을 선출·지명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5항에 따른다. |

| 공무원 징계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32164호, 2021. 11. 30.) |
|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3항 후단 및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라) 위원, 임원의 임기가 신설·변경되거나 연임제한이 신설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없었다가 신설되거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된 임기를 현재 위원에게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 위원에게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의 기산일을 위촉된 날로 할지, 시행일로 할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례를 둔다. 신설 또는 변경된 임기를 현재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현재 위원에 대해 연임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이 법(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대표자부터 적용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선출되는 대표자부터 연임제한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종전 대표자가 계속해서 연임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적용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법령 시행 당시의 임기를 기준으로 규정해 주거나 연임 여부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임기와 연임제한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공공기관 임원 등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입법례] 임기 변경 시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사례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7980호, 2017. 4. 11.)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7669호, 2016. 12. 13.)

제2조(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법례] 임기 신설 시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임되는 위원도 포함되도록 적용례를 둔 사례

| 관세법 시행령 |
|---|
| 부 칙 |
| (대통령령 제27952호, 2017. 3. 27.) |
| 제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입법례] 연임제한 신설 시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도록 한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부 칙 |
|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
| 제8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입법례] 연임제한 신설 시 남은 임기 동안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 전기사업법 시행령 |
|---|
| 부 칙 |
| (법률 제27404호, 2016. 7. 28.) |
| 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전력정책심의회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입법례] 임기 및 연임제한 신설 시 위원 임기의 기산일을 따로 설정하고 그 임기부터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한 사례

| 국가배상법 시행령 |
|---|
| 부 칙 |
| (대통령령 제27581호, 2016. 11. 15.) |
| 제2조(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중전의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

7) 특수법인의 설립·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특수법인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수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중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의 관계를 경과조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 기존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조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민법」상의 법인 등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가장 간단한 한 방식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로 본다”는 형식을 사용한다.

[입법례] 민사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사례(1)

| 문화기본법 |
|---|
| 부 칙 |
| (법률 제14203호, 2016. 5. 29.) |
| 제2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

이와 같은 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기존 법인이 스스로 새로운 특수 법인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입법례] 민사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사례(2)

항공안전기술원법

부 칙

(법률 제12654호, 2014. 5. 21.)

제2조(항공안전기술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센터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기술원의 원장, 이사 및 감사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직원은 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위 「문화기본법」 입법례는 기존 법인이 바로 특수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따로 기존법인을 정리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의사능력을 가진 법인을 법률의 힘에 의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의사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존 법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민사법인이 스스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특수법인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것으로 보고(즉, 설립위원회 등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칙에 규정되지 않음), 민사법인은 그의 모든 권리·의무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특수법인에 이전(포괄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입법례] 민사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사례(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이 밖에 중간 형태로 된 것도 있다. 즉 특수법인을 실제로 설립하고 그 특수법인에 기존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기존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입법례] 특수법인을 폐지·신설한 사례

울산과학기술원법

부 칙

(법률 제13230호, 2015. 3. 27.)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해산과 울산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울산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 ③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 ④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울산과학기술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설립 당시 울산과학기술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과 이사 및 감사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②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나) 특수법인 전환 시 필요한 경과조치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후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나면 민사법인은 이름만 남을 뿐 실체가 없게 되므로 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생기지만, 실제 정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준다.

법인의 명칭이나 종류가 달라질 경우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면 법인 등기나 그 소유 재산 등기 등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로 종전 등기부 명의를 동일성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등기부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종전 법인의 임직원을 새로운 법인의 임직원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⁶⁴⁶⁾와 함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한다.⁶⁴⁷⁾

그 외에도 ① 재산의 승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일이 필요한지, ② 민사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 임원의 임명절차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주무부장관의 감독권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기재사항을 달리하기도 하므로, 일정 기간 내에 정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③ 종전 민사법인의 법률행위를 새로운 법인의 법률행위로 간주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지 등 해당 특수법인의 상황을 고려해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명의, 법인등기부에 관한 일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민사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명칭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록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사단법인 〇〇〇”, “〇〇〇사단법인”, “재단법인 〇〇〇” 또는 “〇〇〇재단법인”으로 해야 하는 반면⁶⁴⁸⁾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〇〇〇”으로 명칭을 정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명칭이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민사법인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부동산 등기를

646)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중략)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647) 임원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면 임원의 임기가 특수법인의 설립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648)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법인의 명칭을 등기할 때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해야 한다.

위한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변경되므로⁶⁴⁹⁾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상의 명칭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등기부상의 명의를 정리해 주어야 한다. 법률에서 경과조치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추후 원인을 소명하여 정리할 수 있겠으나 번거롭고,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 번거로운 문제가 생긴다.

[입법례] 재산 승계 시 재산 가액의 결정 기준일 및 임직원 승계 시 임기 기산일을 명시한 사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부 칙 (법률 제16399호, 2019. 4. 23.) |
| 제2조(창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
|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
|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를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
|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 ⑦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 ⑧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649) 법인의 등록번호에는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이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은 21이고 재단법인은 22이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참조

[입법례] 종전 민사법인을 전환하는 특수법인으로 간주한 후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5조(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등기부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은 제38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8) 제재처분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되,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후 법령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적용기준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법령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없다. 제재처분의 적용기준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하려는 경우에만 개별 법령에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면 된다. 여기서 ‘법령등의 변경’은 해당 제재처분 기준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규정의 변경도 포함하므로, 제재처분 기준의 적용 원인이 되는 의무규정 변경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조제○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조제×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경과조치를 규정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행위 당시는 위반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법령 개정 전에 종결되거나 완성되지 못하고 법령 개정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서 제재처분의 경중과 관계없이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 실적이 없거나 보험가입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와 같이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 법령을 바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례]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31528호, 2021. 3. 9.) |
| 제2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실적이 계속하여 없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제29조 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실적이 계속하여 없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을 계산하여 제29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가)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면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즉,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이 아니라 제재처분 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법령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

만약 개정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완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면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입법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
|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나) 제재처분 기준의 강화 및 완화가 혼재된 경우

제재처분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완화된 것에는 신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것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다. 다만, 이와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에만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다)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임의적 취소사유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처럼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정이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위반행위에 강화된 제재처분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⁶⁵⁰⁾이 없다면 강화된 제재처분 기준이 개정 이후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9) 서식·복제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서식, 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바꾸려면 현재 제작되어 있는 양식·제복·계급장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표지나 신호등에 관한 제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50)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1998. 9. 30. 선고 97헌바38, 1999. 7. 22. 선고 97헌바76,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2021. 1. 28. 선고 2018헌바88 결정).

가) 서식의 경우

서식의 경우 i) 새로운 서식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 ii) 종전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iii) 신규 서식을 병행 사용하게 하는 경우, iv) 일정 기간 종전 서식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네 가지가 있다. 서식의 재고량을 파악한 결과 무시할 정도에 불과하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재고량이 많아 이를 소모하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고가 소모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존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때 새로운 서식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보통 종전의 서식을 새로운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서식에서 추가된 부분은 추가하고 삭제된 부분은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취지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일정 기간 종전 서식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 사례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
|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42호, 2015. 10. 30.) |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입법례] 일정 기간 신규 서식을 함께 사용하게 한 사례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
| 부 칙 (외교부령 제93호, 2021. 4. 27.) |
|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입법례] 신규 서식을 함께 사용하게 하면서 개정 내용에 따라 수정하도록 한 사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법무부령 제978호, 2020. 8. 5.)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미 발행한 허가증, 면허증 등의 서식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보도록 간주할 수 있으면 그러한 간주 규정을 두되, 필요하면 구체적인 바뀌 읽기 규정을 두기도 한다.

[입법례] 서식의 내용에 대해 바뀌 읽기를 규정한 사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02호, 2019. 2. 18.)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방 시설업 등록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중 “시공능력”은 “시공능력·방염처리능력”으로 본다.

나) 복제의 경우

복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정된 제복 등의 생산에 시간이 걸리므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종전의 제복 등을 계속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86호, 2021. 3. 5.)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다) 안전표지나 신호등의 경우

그 밖에 안전표지나 신호등에 관한 제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복제가 변경된 경우와 거의 같은 경과조치를 둔다. 이들을 일시에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또 낭비적 요소도 있으므로 주로 교체될 때까지 종전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입법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부 칙 |
|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20. 10. 7.) |
| 제2조(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6 I. 일반기준 제2호 나목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6 I. 일반기준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면표시가 바뀌어 표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0)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가) 개관

법률에 규정된 벌칙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이러한 폐지·변경이 있기 전에 행해진 범죄를 벌칙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이후에 적발하여 처벌하는 경우의 적용관계를 해결할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i) 벌칙을 신설하는 경우
- ii) 벌칙을 폐지하는 경우
- iii) 벌칙을 변경하는 경우(형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와 형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로서
 - 형벌의 종류가 중해지거나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⁶⁵¹⁾

651) 형의 경중 판단은 「형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즉 형의 종류에 있어서는 중한 형부터 나열하면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의 순서가 된다. 징역과 금고의 경우에는 무기금고가 유기징역보다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보다 길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같은 종류의 형에서는 장기가 긴 것과 상한이 되는 벌금액·과료액이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와 상한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하한이 되는 벌금액·과료액이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 형벌의 종류가 경해지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

iv)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v) 형벌규정과 과태료규정 모두를 변경하는 경우

형벌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형법」 제1조제1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들 규정 때문에 벌칙 규정을 신설하거나 벌칙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 적용하면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그리고 「형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따르면 범죄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벌칙이 신설·폐지되거나 개정된 경우에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된 자연범의 경우에 벌칙이 변경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벌 여부나 처벌의 수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행정법에 규정된 벌칙은 소위 ‘행정벌’이라고 하여 법이론적 고려보다는 그 행정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벌칙의 변경도 실용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행정벌의 경우에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정책 변경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예견되면 국민들이 법령을 어기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법령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두는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나) 벌칙을 신설하는 경우

벌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3조제1항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처벌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부칙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주의적으로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행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헌법과 「형법」의 해석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이런 적용례는 두지 않는다.

다) 벌칙을 폐지하는 경우

벌칙이 폐지되는 경우 아무런 경과조치가 없으면 「형법」 제1조제2항·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벌칙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이전에 범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불문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구법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불문에 부치는 것이 기본법인 「형법」의 취지에 합치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구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벌칙이 폐지되는 경우에 그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보다는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구법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들을 일일이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벌칙이 폐지 되어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⁶⁵²⁾

한편, 2022년 대법원에서는 “범죄 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범죄행위 이후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가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하여,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만 「형법」 제1조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를 적용하도록 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652)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의 문안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이라는 표현 대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이라는 표현도 보이는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신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구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고, 신법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부칙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이는 형벌의 종류가 가벼워지거나 법정형이 낮아지는 경우와 벌칙 규정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벌칙의 구성요건이 되는 의무규정이 완화되거나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폐지 법률로 폐지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부칙에서 폐지하려면 “중전의 규정”이라는 표현 대신 “중전의 ○○○법의 규정”이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입법례] 부칙에서 폐지한 법률의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 항공사업법 |
|--|
| 부 칙 |
|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
| 제2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중전의 「항공법」 및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다. |

라) 벌칙을 변경하는 경우(형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와 형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① 형벌의 종류가 중해지거나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

형벌이 중해지거나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후의 벌칙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형법」 제1조제1항의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어 자연히 개정 전의 벌칙이 적용되게 된다.

② 형벌의 종류가 가벼워지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따라서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위반자에게 유리한 신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형벌을 가볍게 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경우라도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조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⁶⁵³⁾

마)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과료 등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을 형벌 쪽에서 보면 형이 폐지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형법」 제1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가 적용되어 불기소, 면소판결, 형의 집행정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⁶⁵⁴⁾ 과태료규정 신설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하지 않는다.⁶⁵⁵⁾ 그래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정을 하면서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과태료를 과할 수도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전과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을 과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653) 형법 제1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303 판결).

65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655)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이므로 과태료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으나, 행위 당시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을 고려할 때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입법례]

신용협동조합법

부 칙

(법률 제14824호, 2017. 4. 18.)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 제99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형벌규정)이 각각 삭제되고, 법 제10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7호(과태료규정)가 각각 신설된 사례

바)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변경한 경우

대개 법률에는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이 모두 규정되어 있고 한 번의 개정에서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벌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 두 개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규정하도록 한다.

[입법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제1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목을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한 사례도 보이고,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라고만 표시한 후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까지 모두 규정한 사례도 보인다. 이와 같은 혼란은 법령에서 벌칙조항의 제목은 “벌칙”으로 하고 과태료조항의 제목을 “과태료”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문의 수가 많아 장(章)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장명을 “벌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서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도 벌칙 장(章) 아래에 규정된 과태료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구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표현방식이 다르면 다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목을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로 통일하도록 한다.

사) 벌칙의 구성요건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

벌칙의 구성요건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에도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경과조치 문제를 생각하면 된다.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벌칙의 구성요건을 위임하는 모법에서 그에 따른 경과조치까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하위법령에서도 경과조치를 둘 수 있다.

[입법례] 대통령령에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25719호, 2014. 11. 11.) |
| 제2조(포획·채취 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가목·라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1)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서 「형법」 제1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행위시법 주위에 따라 당연히 행위 시의 규정이 적용되고,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거나 과태료 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형벌과 같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삭제되거나 낮아진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입법례] 행위당시의 과태료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한 사례

| 비료관리법 |
|---|
| 부 칙 (법률 제16980호, 2020. 2. 11.) |
|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또한, 과태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에서 그 세부 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완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⁶⁵⁶⁾

[입법례] 대통령령에서 세부 기준을 변경하면서 경과조치를 둔 사례

| 방송법 시행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가상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거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2호거목2)에 따른다. |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형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형벌로 처벌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

656) 법령에 규정된 “법률”의 의미는 해당 법령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따라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순수한 법률만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 의미의 순수한 법률뿐 아니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하위법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있어서의 “법률”의 의미를 살펴보면,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해당 “법률”을 “법령”의 의미로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고, 유사한 조문 체계를 가지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법률” 의미에 관한 학계의 입장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등에서도 “법률”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명령까지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있어서의 “법률”은 순수한 “법률”을 의미한다고 보기 보다는 “법률과 그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례] 과태료의 형벌 전환에 따라 경과조치를 둔 사례

| 실내공기질 관리법 |
|--|
| 부 칙 |
| (법률 제14486호, 2016. 12. 27.) |
| 제2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2) 법령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법률이 실효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에 행해진 인허가 등의 처분이나 위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효기간 동안 행해진 인허가 등의 처분의 경우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한시법이 실효되면 그 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만일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한시법이 실효된 경우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위법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이념의 변경 여부에 따라 한시법을 적용하는 판례의 입장⁶⁵⁷⁾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론적으로는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65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령 조문 폐지의 동기가 법률 이념의 변경(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추급효를 인정하여 실효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법령 조문 폐지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여 실효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678 판결).

[입법례] 처분 등의 효력 유지 규정을 둔 사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4030호, 2016. 2. 12.)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사후 취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3조와 제14조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입법례] 절차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경과조치를 둔 사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 칙

(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조,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입법례]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사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5435호, 2018. 3. 13.)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폐지·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의 경과조치

가) 일반적 경과조치

법령을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개별적인 경과 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종전 법령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입법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 부 칙 (법률 제16305호, 2019. 4. 2.) |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나) 전부개정 시 종전 부칙의 수용

법령의 개정 방식으로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다.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칙에 잇달아 새로운 부칙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부칙이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 반면에,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령이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되는데, 이 경우 종전 부칙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전부개정은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부칙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고 있다.⁶⁵⁸⁾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658)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⁶⁵⁹⁾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실수 기타의 이유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이 사건 전문개정법에 반영되지 못한 이상, 위 전문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전문개정법률의 일반적 효력에 의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중략)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근거의 창설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맡기고 있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결정)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특별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해석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을 전부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종전 부칙을 상세히 검토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부칙을 모두 개정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전부개정법령에서 수용하는 종전 부칙의 표현방식에 관해서는 종전 부칙은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칙이 아니라 종전 부칙을 전부개정된 법령에 다시 규정하는 것이고, 종전 부칙의 내용은 종전 부칙 당시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부칙의 공포번호, 시행일과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써 주어야 한다. 특히, 종전 부칙과 전부개정된 규정을 연계하여 부칙을 둘 경우 종전 부칙의 내용에 전부개정된 규정이 혼재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는 필요시 전부개정법령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수용하면 무방하나, 종전 부칙의 적용례나 특례는 전부개정법령의 입장에서

659)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종전 부칙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종전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지 전부를 취득하였으나, 1986년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가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로 제한되었다. 이 때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1999년 공유수면매립법을 전부 개정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취득할 수 있는 매립지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법제처는 매립지의 취득 범위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글화를 주된 목적으로 했었고 종전의 경과규정은 개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부칙의 효력을 인정했다(법제처 2010. 7. 26. 10-0208 해석례).

보면 구법령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경과조치”로 전환시켜 규정해야 한다.

한편 법령이 전부개정되기 전에 오랫동안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무상으로 종전 부칙 중 어떤 부칙이 아직까지 유효하여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 경우 최대한 종전 부칙을 모두 검토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부칙에 대해 개별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되, 누락될 수 있는 종전 부칙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입법례] 전부개정하면서 종전의 부칙에 대한 규정을 둔 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부 칙 |
| (법률 제14567호, 2017. 2. 8.) |
| 제28조(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입법례] 전부개정하면서 종전 부칙의 특례를 경과조치로 전환한 사례

| 군인연금법 |
|--|
| 부 칙 |
|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
| 제9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 및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입법례] 전부개정하면서 부칙에 보충적인 경과조치를 둔 사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부 칙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
| 제34조(중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14) 일괄개정 방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복수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경우로서 일괄개정 방식을 취하는 경우 개정법령에 따라 경과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일괄개정하는 경우에는 대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개별 법령들을 모아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령마다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 등이 규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일일이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두는 대신 일괄개정법령 자체의 경과조치 등으로 규정해 주면 된다. 만약 개정되는 특정 개별 법령에만 적용되는 경과조치 등이 있다면 그 법령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부칙에 경과조치 등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일괄개정법령 전체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등을 둔 사례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중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입법례] 일괄개정법령 중 개별 법령에만 적용되는 경과조치 등을 든 사례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 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 입법 유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분법 또는 조문 이관 시의 경과조치

특정 법령의 조문을 이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이관되는 조문과 관련된 경과조치는 종전 법령이 아니라 해당 조문이 새로 규정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분법의 경우 종전 법률의 개정을 필히 수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문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를 새로운 법률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문 이관(분법에 따른 이관 포함) 시 경과조치는 신규법령 중 어디에 규정하든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⁶⁶⁰⁾ 하지만, 대부분의 입법례는 신법령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입법관행을

660) 이와 관련해 종전 규정의 효력이 상실해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에 종전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해 종전 규정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경과조치의 기능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당초 구법령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면,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는 같은 법령에서 특정 규정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고려하고, 이관되는 조문과 관련하여 향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될 법률은 구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새로 규정하려는 법률이므로 국민의 법 이해 및 조문 검색의 편의를 위해 이관되는 내용과 관련된 경과조치는 신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⁶⁶¹⁾

[입법례] 다른 법령으로의 내용 이관 시 경과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⁶⁶²⁾

부 칙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제4조(지원 금품의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복구비등의 선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한 피해 물량 등의 신고는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물량 등의 신고로 본다.

제6조(복구비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명령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두는 일반적 경과조치와는 달리 신규법령의 연결을 위해 두는 것이고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하나의 법령 으로부터 통일적 규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신법령에 종전 규정의 내용이 그대로 이관되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신법령에 종전 규정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개정되는 신규법령 모두에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661) 특히, 폐지·제정의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없어지기 때문에 종전 법령에 별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관련 경과조치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662)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관하여 규정한 사례이다.

[입법례] 제정되는 신법령으로의 내용 이관 시 경과조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⁶⁶³⁾

부 칙

(법률 제17242호, 2020. 4. 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지도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기존 취득 지도분야에 따라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생산관리, 환경, 생명공학분야는 기술혁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정보처리분야는 정보기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나) 조례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위임하거나 기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을 경우 기존 조례가 개정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6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사례이다.

이 경우 법령 시행일과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 사이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하려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 이후에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는 적용례만으로는 부족하고,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 이전 사항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수상레저안전법

부 칙

(법률 제16567호, 2019. 8. 27.)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0324호, 2020. 1. 7.)

제2조(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제정·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 규정 방식

1)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입법례]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
| 부 칙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
|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
|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

2) 두 개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하려는 법령별로 각 항을 구분하여 각 항마다 개정문을 둔다.

법령의 배열순서는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거나 개정 내용이 소관 기관별로 분류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효율성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부처 순서로 규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정부조직법」상 부처 순서대로 규정한 사례

| 정부조직법 |
|--|
| 부 칙 |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3. 행정안전부장관 |
|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3. 해양경찰관서의 장 |
| ③ ~ ⑪ (생략) |
| ⑫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 (이하 생략) |

3) 유의 사항

가) 부칙에서 개정하지 않고 개정을 위한 단일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법령의 개정 내용이 많아 부칙에서 이를 모두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부칙에서 개정하지 말고 따로 모아 하나의 법률로 개정·폐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법률의 제명은 대략 「○○○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붙일 수 있다.

[입법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5505호, 1998. 1. 13.)

제1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이하 생략)

제2조(공사채등록법의 개정) 공사채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이하 생략)

나)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의 개정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법률에서 다른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⁶⁴⁾

- (1) 법령의 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 인용조문의 정리를 위한 개정과 정리 차원의 경미한 사항의 추가
- (2) 법령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 부분의 정리를 위한 개정
- (3)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는 경우에 그 다른 법령의 정리를 위한 개정
- (4) 기구 신설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신설된 기구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중 관련 기관의 업무 변경을 위한 개정

6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5) 하나의 법령에 통합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해 기본이 되는 법령에 통합 규정하면서 관련 법령의 해당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
- (6) 제도의 신설을 위한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존 법률의 개정
- (7)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가 신설·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

다) 부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권자와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인용조문 또는 자구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이라도 부령의 부칙에서 다른 부처 소관의 부령을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라) 다른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공포번호를 명기하여 개정되는 부칙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마)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거나 개정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예: 법령 A의 ‘다른 법령의 개정’ 규정으로 법령 B 제○조가 삭제된 경우, ‘법령 B 제○조’를 인용하는 내용의 ‘법령 C 제△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등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다른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입법례] 다른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사례

| 소득세법 |
|---|
| 부 칙 |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
|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바)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별도의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두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도의 경과조치를 둔 사례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
| 부 칙 |
| (대통령령 제20768호, 2008. 4. 16.) |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
| 제5조제1항 중 “진료처·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
| ② (생 략) |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과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장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해당 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치과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장으로 본다. |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 의의

법령을 전부개정하거나 법령을 폐지·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전부개정되는 법령이나 그 조항을 인용하는 법령이 있으면 부칙에서 그 법령을 개정해 주는데, 보통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의 조항을 찾아내어 개정하게 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한 검색 작업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해 주더라도 그에 덧붙여 구법령을 인용하는 법령은 신법령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그 규정의 제목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고 붙인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i)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이 달라진 경우(법령의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을 폐지하고 대체 법령을 제정하여 인용된 제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와 ii)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에 변경이 없는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밖에 특수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관할구역 변경 등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두도록 한다.

나. 규정 방식

1)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이 달라진 경우

[입법례] 법령 제명이 변경된 사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에는 조의 제목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본문 가운데서도 “다른 법률에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률의 제명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위의 입법례와 같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제명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내용 변경 없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띄어쓰기만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명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제명에 대해 띄어쓰기를 다르게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므로 부칙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에 변경이 없는 경우

제명의 변경이 없으면 인용된 법률 규정에 대해서만 정해도 충분하다.

[입법례] 인용된 법률 규정이 변경된 사례

| 계량에 관한 법률 |
|--|
| 부 칙 |
| (법률 제12694호, 2014. 5. 28.) |
|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3) 행정기관 등이 개편된 경우

행정기관을 개편한 경우에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 주지만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리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법적으로 제대로 정리되기 전에 법해석이나 집행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기존의 행정청의 명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꿔 읽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통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나 관할구역과 관련된 법령 적용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행정기관 개편에 따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사례

| 정부조직법 |
|--|
| 부 칙 |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노동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노동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차관”을, “노동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을, “지방노동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지방노동관서”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입법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사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30794호, 2020. 6. 2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4) 법인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법인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을 부칙에서 개정해 주면서 다음과 같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덧붙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입법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 칙

(법률 제7944호, 2006. 4. 28.)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 유의 사항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실제 그 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의 내용을 지시된 대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판단의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지시된 대로 해야 할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일의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법령이 집행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 관계 법령에서 ○○를 인용한 경우에는 △△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가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법률이 일의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워진다.⁶⁶⁵⁾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불확정적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665)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어떤 법령이 “금융 관계 법령”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